

제352회 정례회
2016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용어 수정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의 제명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」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가목)
- 나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의 제명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나목)
- 다.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의 제명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으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다목)
- 라.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제명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, 일정등급 “(「학교급식법행규칙」)”을 “(「학교급식법시행규칙」)”으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라목)
- 마.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으로 “보육시설”이 “어린이집”으로 변경됨.(안 제4조제1항의제3호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개정 사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2조(정의) 제3호 가목은,
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2012. 6. 1)됨에 따라,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였음.
- 같은 조 나목 및 라목은,
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과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 개정(2011. 7. 21)됨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였음.
- 같은 조 다목은,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으로 개정(2010. 5. 25) 되었으므로,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였음.
- 안 제4조제1항제3호는,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“보육시설”을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규정된 “어린이집”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고, 일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